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12-104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마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권 부여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구청장인 이사장을 문화예술계의 덕망있는 외부 인사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비상임 이사장으로 변경
- 나. 재단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
- 다. 선임직 이사 임명권을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
- 라.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

3. 개정 조례안 : 따로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 및 제5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협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11. 9 ~ 11. 14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2.11.15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
로, “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재단법인 마포문화
재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재단”을 “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기타”를
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상임이사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”를 “상임이사”로 하고, “인”
를 각각 “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임면에 관한 사항은”을 “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
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”으로, “대표는”을 “이사장과 상임이사는”으로
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표”를 “이사장 및 상임이사”로, “이사장이”를 “
구청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대표”를 “상임이사”로, “이사”를 “이
사장, 이사”로, “비상근”은 “비상임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대표”를 “상임이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중 “이사장이”를 “상임이사가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상임이사, 이사와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, 다만, 임기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
<p>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 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대표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7조(임원) ① 상임이사 1명 15명 1명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③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</p>

현 행	개 정
<p>④ <u>대표</u>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, 선임직 이사는 <u>이사장이</u> 임명한다.</p> <p>⑤ <u>대표</u>를 제외한 <u>이사</u> 및 감사는 <u>비상근</u>으로 한다.</p>	<p>④ <u>이사장 및 상임이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청장이</u> -----.</p> <p>⑤ <u>상임이사를</u> ----- <u>이사장, 이사</u> ----- <u>비상임</u>-----.</p>
<p><u>제8조(임원의 직무)</u>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	<p><u>제8조(임원의 직무)</u>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
<p><u>제9조(이사회)</u>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<u>대표</u> 및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괄한다. (단서 신설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제9조(이사회)</u> ① ----- ----- <u>상임이사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0조(직원의 임면)</u>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이사장이</u> 임명한다.</p>	<p><u>제10조(직원의 임면)</u> ----- ----- <u>상임이사가</u> -----.</p>